

사방지 지정 고시

「사방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.

2020년 2월 26일

함 안 군 수



1. 사방지 지정내역 :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 18외 28필지
※ 세부내역 붙임 지정내역 참조
2. 지정사유 : 토석류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한 2020년 사방사업
시행에 따른 사방지 지정
3. 사방지 지형도면 : 붙임 도면 참조
4. 이해관계인은 우리 군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,
기타 문의사항은 함안군 산림복지과(055-580-4554) 또는 경상남도
산림환경연구원(055-254-391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사방지 지정조서 및 지정구역도 각 1부. 끝.